

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

- ※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, 시방서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, 「공사계약 특수조건」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- ※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, 현장설명서, 견적제출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.
- ※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,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(또는 적용례)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.

1.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

가. 공 사 명 :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(2차)

나. 위 치 : 인천광역시 웅진군 북도면, 연평면, 백령면, 영흥면 일원

※ 도서지역입니다.

다. 공사유형 : 신설공사

라. 공사구분 : 전문공사

마. 공사내용 및 공사에정금액

(단위 : 원)

주요 공사 내용	공사기간	추정가격	부가세	관급자재		총공사비
				관급자설치	도급자설치	
슬레이트 해체·철거 1,584㎡	착공일부터 60일	63,480,000	6,348,000	-	-	69,828,000

바. 기초금액 : 금69,828,000원(추정가격+부가가치세)

※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,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.

2. 견적제출 및 견적제출 집행(개찰)

가. 본 견적제출은 전자 제출로만 집행합니다.

나. 제 출 기 간 : 2026. 9. 9.(수) 21:00 ~ 2026. 9.15.(화) 10:00

다. 집행(개찰) : 2026. 9.15.(화) 11:00, 웅진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

※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.

라. 본 견적제출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출자가 없거나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재견적제출에 부칠 수 있으나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견적제출하시기 바라며, 재견적제출 시 견적제출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.

3.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

가. 소액수의(총액), 지역제한, 단독계약, 최저가 대상 공사입니다.

나.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.(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, 032-899-2623)

4. 견적제출 참가자격

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

나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구조물해체·비계공사업과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석면해체·제거업을 모두 등록하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.

다.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[신규사업자(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,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)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.]부터 견적제출일(다만,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)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(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)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.

라. 본 견적제출은 전자제출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,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견적제출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
마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‘조세포탈 등을 한 자’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제출 하는 경우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.

5.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보증금

가. 참가신청 :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

나. 보증금 :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며(보증금 납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견적서 제출로 납부 갈음)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

6.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

가. 예정가격결정 :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±3%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천(2개씩 선택)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.

나. 계약상대자 결정 :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을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행정자치부 예규)」 제5장 (수의계약 운영요령) 『별표 1』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서가 제출된 경우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8조에

-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.
- 다. 계약상대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
7. 견적제출의 무효

- 가.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39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(행정안전부예규)」 입찰유서 및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」에 따릅니다.
- 나.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.
- 다. 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(또는 법인의 명칭), 대표자(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전원)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견적제출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의 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견적제출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.
- 라.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」 제11조(입찰참가자격 확인)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견적제출 참가자 및 참가자격 없는 자의 견적제출참가는 무효로 합니다.

8.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

- 가.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응진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. (응진군 홈페이지의 "계약관련서식" 참조)
- 나.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다.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9.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

- 가.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.

(단위:원)

국민건강 보 험 료	노인장기 요양보험료	국민연금 보 험 료	산업 안전 보건관리비	퇴직공제 부금비	안전관리비	품질관리비	합계
1,032,074	135,614	1,363,658	1,146,730	660,298	-	-	4,338,374

- 나. 견적제출참가자는 금액 산정 시 ‘가’항의 국민건강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, 안전관리비, 품질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건설기술진흥법」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**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**(납입확인서(하수급인 포함) 제출)하여야 합니다.

- 다. 본 공사의 현장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“가”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준공 시 감액정산합니다.

10.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

- 가.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「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」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.
- 1) 예외사항(청구내역 제출 절차는 생략하고 지급내역(은행입금증, 영수증 등) 제출)
- 가)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
- 나) 노무비 청구 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
- 다) 계약개설 불가,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
- 라)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

11. 하도급 관련 사항

- 가.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,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(전기, 통신, 소방 공사 등)에 따릅니다.
- 나.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**건설산업기본법령 등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**하여야 합니다.
- 다. 「지방계약법」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.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,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라. 「지방계약법」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마. 「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」 제15조에 따라 **하도급 시 지역업체 하도급비를 70% 이상 권장**드립니다.

12. 「하도급지킴이」(전자대금지급시스템) 이용에 관한 사항

- 가. 본 공사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「하도급지킴이」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.
- 나.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「하도급지킴이」이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나리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「하도급지킴이」이용 확인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인서 제출을 갈음합니다.
- ※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인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.
- 다. 계약상대자는 「하도급지킴이」를 이용(‘표준하도급계약서’ 기반)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하도급자(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)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「하도급지킴이」에 등록하여야 합니다.
- 라.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, 노무비, 자재·건설기계대여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**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, 노무비, 자재·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.**
- 마. 「하도급지킴이」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“나라장터시스템 - 하도급 지킴이 - 시스템 사용안내(업체)”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3.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

- 가.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(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)하여야 합니다.
- 나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(현장별 보증서)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발주자가 대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, 건설업자,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14.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

- 가.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,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「**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**」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.

《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(법 제4조, 제9조)》

-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③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- ④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- 다.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해야 합니다.
- 라. 위 ‘가’ 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해야 합니다.
- 마. 계약상대자가 위 ‘가, 다’ 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바.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,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「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」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다만,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사.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수의계약 배제여부 심사 서류 제출 시 「안전보건관리계획서」를 제출하고 발주부서(사업부서)로부터 「수급업체 안전보건준수평가」를 받아야 합니다.**

15.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

- 가. 「웅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지역업체 자재 및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**지역 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 사용**을 권장드립니다.
- 나. 다만, 과도한 가격 책정, 불성실한 시공 등 공정한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시 웅진군 건설과(032-899-2910)로 연락하여 주시면 즉각적인 현장확인 및 계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16. 청렴QR코드 활용 안내

- 가. 본 공사 계약상대자는 웅진군 청렴시책을 위한 『청렴QR코드』 활용을 권장드립니다.
- 나. 『청렴QR코드』 활용 방법, 예시 등은 계약 시 첨부되는 서류를 참고바랍니다.

17. 기타

- 가.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,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%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.
- 나. 전자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(☎1588-0800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- 다.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라.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,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,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,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지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,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, 시설공사입찰유의서,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,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견적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- 마. 보충정보 제공처
-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: 웅진군 재무과 재무회계팀(☎ 032-899-2422)
 - 공사에 관한 사항 : 웅진군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(☎ 032-899-2623)
 - 전자견적제출 이용에 관한사항 :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(☎ 1588-0800)
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9. 9.

웅진군 분임재무관

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군 재무과(☎032-899-2422)로, 직원이 금품,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군 기획감사실(☎032-899-2775)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